

Legislative & Policy Weekly

세종Law *Focus*

주간 입법·정책 동향

Vol.274 | 2025.02.24 (2025.02.17~2025.02.23)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2. 입법(행정)예고 법안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1. 위원회 일정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2025.02.17~2025.02.23)

Contact: 백대용 변호사(파트너)

02-316-4630, 010-3248-5382
dybaek@shinkim.com

Summary

【정부의 주요 정책】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 한국형 세계적 기업연구소(K-HERO) 육성·지원사업**」을 공고했습니다. 연구소의 연구개발 역량에 따라 차별화된 지원을 추진하고, 선정된 연구소는 과제당 2~4년간 최대 31억 원의 지원을 하여 미래 기술혁신을 선도할 핵심 연구소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가인공지능위원회>는 「**제3차 국가AI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관계부처는 ①「AI컴퓨팅 인프라 확충을 통한 국가AI역량 강화방안」(주관: 과기정통부), ②「AI스타트업 육성을 통한 AI 활용 확산방안」(주관: 중기부), ③「AI데이터 확충 및 개방 확대방안」(주관: 개인정보위) 등 3건의 안건을 발표하였습니다.

【입법(행정)예고】

<산업통상자원부>는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 기관에 지방자치단체 및 기업을 추가하는 「**무역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는 환경기술인력의 육성에 관한 사무에 고유식별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환경기술인력의 육성 관련 업무를 환경산업과 관련된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가 있는 재활용지정사업자의 관련 업종과 대상을 변경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진단 제도의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 및 재건축 조합설립 등을 위한 동의요건 완화 대상을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법률 발의 및 제출안】

자산운용비율을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총자산, 자기자본, 채권 또는 주식 소유의 합계액은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상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정하고, 자산운용비율을 초과한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하기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의원 등 18인)**」,

주권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소각하거나 주주에게 균등 배분하는 등 열거된 방법으로만 처분할 수 있도록 주권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처분 시 준수하여야 하는 방법을 상향 입법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의원 등 15인)**」,

은행대리업 제도를 도입하여 지방에 거주하는 금융 취약계층의 금융 서비스 이용을 지원하고 은행업 및 은행대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2인)」 ,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게도 신기술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의무를 고의 또는 중과실로 투자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제3자에게 연대책임을 지을 수 없도록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의원 등 10인)」 ,

거주자가 공익법인등에 기부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계산할 때 양도소득금액에서 기부예정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차감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의원 등 10인)」 ,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협력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에 출연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의원 등 12인)」 ,

주요 원자재 가격이 100분의 10 이내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 이외에는 계약금액을 고정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할 수 없도록 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0인)」 ,

장기계속계약 시 총 계약기간을 약정하도록 하고, 그 계약기간 내에 계약상대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사업 지연이 발생할 경우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동시에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의원 등 13인)」 ,

순공사원가의 98% 미만으로 투찰한 경우 낙찰을 배제하는 예정가격 기준을 현행 100억 원 미만에서 500억 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의원 등 11인)」 ,

납품대금 연동을 피하기 위한 탈법행위 유형을 구체화하고, 수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을 요청했다는 이유로 거래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0인)」 ,

사용자 정의를 확대하고 근로조건에 대해 쟁의행위를 진행할 수 있도록 쟁의행위 범위 대상을 확대하며, 손해배상 면제책임 및 청구 대상을 추가하는 등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6인)」 ,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시·도지사는 동일한 위반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회의원 등 13인)」 ,

대규모 사업의 경우 전체 개발사업 완료 이전에 10년 주기로 준공된 일부 토지별로 개발부담금을 결정·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중간정산 규정을 마련하고, 사업시행자는 전체 개발사업이 완료되면 개발부담금을 다시 산정·조정받아 중간정산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의원 등 10인)**」,

공동주택 단지 내 복리시설 리모델링 방법 및 범위에 관한 사항과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등록에 관한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리모델링 사업 절차를 체계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0인)**」,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부동산투자회사를 포함하고, 부동산투자회사가 해당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투자하고 지역주민에 우선적으로 청약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의원 등 11인)**」 등이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국회의사일정(안)】

<법사위>, <정무위>, <기재위>, <교육위>, <농해수위>, <문체위>, <복지위>, <국토위> 등에서 법안 심사, 업무보고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목 차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바로가기](#)

- 「2025년 한국형 세계적 기업연구소(K-HERO) 육성·지원사업」 공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 8
- 「2025 중소·벤처기업 수출지원 방안」 발표(중소벤처기업부) 9
- 「제3차 국가AI위원회」 개최(국가인공지능위원회) 10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바로가기](#)

-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행정안전부) 13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보건복지부) 13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보건복지부) 14
-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고용노동부) 15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고용노동부) 15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고용노동부) 15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환경부) 16

2. 입법(행정)예고 법안

[바로가기](#)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학기술정보통신부) 17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문화체육관광부) 17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문화체육관광부) 17
- 무역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산업통상자원부) 18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환경부) 18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환경부) 19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 19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 20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방송통신위원회) 20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바로가기](#)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의원 등 12인) 21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의원 등 18인) 21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의원 등 15인) 22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2인) 22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의원 등 14인) 23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의원 등 10인) 24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인)	24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의원 등 10인)	24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의원 등 10인)	25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의원 등 11인)	25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인)	26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천하람의원 등 10인)	26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의원 등 12인)	27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0인)	27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의원 등 13인)	28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의원 등 11인)	28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1인)	29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의원 등 11인)	29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4인)	30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인)	30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의원 등 10인)	31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인)	31
• 굴 산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정점식의원 등 14인)	31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0인)	32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의원 등 14인)	32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의원 등 10인)	33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의원 등 18인)	33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의원 등 13인)	34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6인)	34
•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12인)	35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등 13인)	35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1인)	36
•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2인)	36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의원 등 10인)	36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0인)	37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의원 등 11인)	38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손명수의원 등 15인)	38
• 결혼서비스업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조은희의원 등 15인)	39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바로가기](#)

1. 위원회 일정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바로가기](#)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273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바로가기](#)

- [금융] 1.21. 금융당국의 상장폐지 제도변경 발표 이후 상장유지 결정을 이끌어 낸 최초사례 소개(A사, 코스닥 상장)
- [소송]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에서 출연금과 보조금을 구분해야 한다는 판결 선고
- [소송] 경의선숲길 관련 국가철도공단 서울시에 대한 거액의 변상금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제1심 판결을 항소심에서 뒤집은 사례
- [금융] 은행 및 금융지주 금융규제 주간 브리핑 - Vol.23 (2025년 2월 3째주)
- [중대재해] 태풍 힌남노로 인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 침수사고 사건에서 저수지 관리자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전부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 [ESG]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중점 점검사항 사전예고
- [바이오/헬스케어]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 및 시행과 그 시사점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년 한국형 세계적 기업연구소(K-HERO) 육성·지원사업」 공고 - 국제(글로벌) 선도연구소 육성사업, 기업 연구개발 역량강화 지원 2.0사업 - 과제당 2~4년간 최대 31억원 지원하여 육성	2025-02-19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수 연구개발역량을 보유한 기업부설연구소(이하 ‘기업연구소’)를 발굴·지원하여 미래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세계적 수준의 연구소(K-HERO)로 육성하기 위한 「세계적 기업연구소(K-HERO) 육성·지원사업」을 공고하였음

기업연구소는 민간기업의 연구개발(R&D) 활동을 담당하는 핵심 주축으로, 그간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여 현재 약 4만 1천여 개가 운영되고 있음. 기술패권 시대 치열한 기술 경쟁에 직면하여 민간 연구개발 활성화와 함께 기업연구소 질적 성장의 중요성 또한 강조되고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세계적 기업연구소(K-HERO) 육성·지원사업」을 통해 기업연구소의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미래 신산업 창출과 세계 시장 선도를 위한 기술혁신을 지원하고자 함. 본 사업은 기업연구소 연구개발 역량진단을 통해 우수성과 성장 가능성이 검증된 기업연구소를 선별하여, 대학 및 출연연구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맞춤형 지원을 통한 기업연구소의 질적 성장 도모에 초점을 두고 있음

또한, 연구소의 연구개발 역량에 따라 ① 국제(글로벌) 선도연구소 육성사업과 ② 기업 연구개발 역량강화 지원 2.0사업으로 구분하여 차별화된 지원을 추진함. 선정된 연구소는 과제당 2~4년간 최대 31억원의 지원을 받아 연구개발 역량을 집중적으로 강화하고, 미래 기술혁신을 선도할 핵심 연구소로 육성될 계획이라고 밝힘

① 국제(글로벌) 선도연구소 육성사업

- 과기정통부 장관이 지정한 우수기업연구소를 대상으로 12대 국가전략기술분야의 주요기술 확보 및 상용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전 기획평가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은 기업연구소에 연간9억원씩 3.5년간 지원

② 기업 연구개발 역량강화 지원 2.0사업

- 연구개발 역량진단 결과 역량이 지속적으로 향상된 성장형·도약형 기업연구소를 대상으로, 12대 전략기술 분야의 기존기술·제품 고도화 및 혁신적 신기술 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3년간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

[내역사업별 지원내용]

사업명		대상	지원내용 / 규모
국제(글로벌) 선도연구소 육성		우수 기업 연구소	· 12대 국가전략기술분야 주요기술 추가확보 및 상용화 지원 · 1단계 사전기획: 6개 과제(0.75억원, 3개월), 2단계 연구개발: 3개 과제(9억원/연, 3.5년)
기업연구개발역량강화 지원 2.0	우수기업 연구소 육성	성장형 연구소	· 12대 국가전략기술분야 혁신적 신제품(기술) 개발 지원 · 1단계 사전기획: 4개 과제(0.3억원, 3개월), 2단계 연구개발: 2개 과제(4억원/연, 2.5년)
	기업연구소 보유역량 고도화	도약형 연구소	· 12대 국가전략기술분야 기업연구소 주력제품(기술) 고도화 개발 지원 · 2개 과제(3억원 이내/년, 1.75년)

중소벤처기업부

「2025 중소·벤처기업 수출지원 방안」 발표

- 2024년 「글로벌화 대책」 구체화 및 트럼프 2기 등에 맞추어 수출정책 보완
- 트럼프 2기 애로센터 운영, 긴급지원 및 수출영향품목 특별관리 체계 도입
- 수출 외연을 제품 중심에서 테크서비스 수출, 한류 전략품목 등으로 확대
- 지역기반 수출전략 프로젝트 시범 도입 등 주력·신흥시장별 수출 지원
- 국내외 원팀 협의체 등 중소기업 글로벌화 네트워크·협력기반 고도화

2025-02-18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 중소·벤처기업 수출지원 방안」을 발표했음 수출 중소기업은 전체 중소기업 대비 매출·고용 등에서 높은 성과를 창출하며 우리 경제에 기여하고 있으나, 주요 수출국의 보호무역주의 심화,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 중소기업을 둘러싼 글로벌화 대응과제는 점차 증가하고 있음

고환율, 트럼프 2기 관세 조치 등 최근에 등장한 대내외 변수와 '24년 중소기업 수출 현황 등을 분석하여, 지난해 마련한 「중소·벤처기업 글로벌화 지원 대책」을 보완·강화하기 위한 「2025년 중소·벤처기업 수출지원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힘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조치 등에 대해 수출현안 신속 대응 지원체계 구축·운영

- 전국 15개 수출지원센터에 ‘애로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정책자금 평가 절차 간소화 및 필요시 수출바우처 물류비 지원한도 상향
- 글로벌공급망 재편 대응 등을 위해 해외법인에 대한 정책자금 600억원 최초 공급, 실리콘 밸리에 ‘해외진출 통합 지원거점’ 구축 추진
- 중소기업 수출영향 품목 50개 내외를 선별해 특별관리
- 수출규제 등 국가별 정책 변화 정보 신속히 제공

② 어떠한 대외 환경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탄탄한 중소기업 수출구조 확립

- 올해 수출액 100만\$ 미만 유망 초보기업을 수출액 100만\$ 기업으로 1,000개사 육성
- 140억원 규모의 ‘테크서비스 전용 수출바우처’ 신설 등 테크서비스 수출 본격 지원
- 트럼프 2기 상황에서도 화장품 수출 가속화를 위해 화장품 생산자금을 지원하는 ‘K-뷰티론’ 200억원 신설, K-뷰티 국제박람회 개최
- 중소기업 3대 新한류품목을 선별하고 특화 프로그램 도입
- 신흥시장별 맞춤 글로벌화 진출 지원 프로젝트 새롭게 도입

③ 중소·벤처기업 글로벌화 원팀 협의체 등 기존에 구축한 네트워크와 협력 기반 고도화

- 17개국 25개 지역별 재외공관에 설치된 ‘중소·벤처기업 지원 협의체’협력기반 강화를 위해 재외공관 직접 지원 프로그램 신설
- 원팀 협의체에서 발굴한 해외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글로벌 내비게이터’ 새롭게 구축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제3차 국가AI위원회」 개최 - (모델) 세계최고 AI모델 개발 목표로 ‘국가대표 AI팀’ 선발 및 데이터·GPU·연구비 전폭지원 - (인재) AI최고인재 경진대회 ‘글로벌 AI챌린지’ 개최, 글로벌 AI프론티어랩 확대(美→유럽 등) - (컴퓨팅인프라) 고성능 GPU 1.8만장 확보(~’26.上), 민간투자 활성화 위한 세제지원 및 입지·전력 제도 개선 - (데이터) 민간수요 높은 비정형 원본데이터·공공데이터 활용 확대, 양질의 제조·산업데이터 대폭 확충 - (스타트업·활용) ’27년까지 AI유니콘 5개 육성과 중기 AI 활용률 50% 목표로 제조 AI전문기업 100개 집중지원 (인력·자금·판로), ’25년 정책금융 5.7조원 지원, 산업·업종별 선도프로젝트 추진	2025-02-20
-----------	--	------------

국가인공지능위원회는 제3차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개최하였음. 지난 9월 민관 합동 국가 AI정책 컨트롤타워로 출범한 국가인공지능위원회는 그간 5개 분과위원회를 운영하며, 민·관이 함께 국내 AI 생태계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를 논의해왔음. 이번 회의는 최근 급변하는 글로벌 AI 시장 동향을 진단하고,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범정부 정책을 마련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개최되었다고 밝힘

최근, 미국·EU·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은 수백조원 규모의 AI분야 대규모 투자계획을 발표하며 글로벌 AI주도권 확보를 위한 국가 간 총력전이 전개되고 있음. 더욱이, 스타급 AI핵심인재를 보유한 중국 AI스타트업 딥시크가 SW·알고리즘 혁신으로 기존 빅테크 주도의 AI경쟁 구도를 극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며, 전세계 AI기술 혁신과 투자 경쟁은 가속화되고 있음.

관계부처는 ①「AI컴퓨팅 인프라 확충을 통한 국가AI역량 강화방안」(주관: 과기정통부), ②「AI스타트업 육성을 통한 AI 활용 확산방안」(주관: 중기부), ③「AI데이터 확충 및 개방 확대방안」(주관: 개인정보위) 등 3건의 안건을 발표하였음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미국과 중국 등 치열한 경쟁이 전개되는 글로벌 AI 생태계에서 우리나라의 AI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도록 세계 수준의 AI 모델 개발과 최고급 인재 양성을 추진하는 한편, AI 컴퓨팅 자원 및 데이터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전면적인 AI 산업화와 국가 AI 전환을 가속화함

‘AI국가대표 정예팀’을 선발하여 글로벌 Top수준의 대형언어모델(LLM) 개발을 목표로 데이터·GPU 등 연구자원을 집중 지원하는 ‘(가칭) 월드 베스트 LLM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정예팀이 필요한 글로벌 핵심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연구비 등 지원을 확대함

최고급 AI 인재를 양성·확보하기 위해 AI분야 도전적 문제를 해결하는 ‘글로벌 AI챌린지’를 개최를 추진하고, 작년 미국에 개소한 ‘글로벌 AI 프론티어 랩’을 유럽 등 다른 국가로 확대할 계획임. 아울러, 국내 AI 신진연구자를 집중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한편, 기업이 원하는 AI 융합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산학 협력형 AX대학원 신설을 추진하고, 혁신형 교육(이노베이션 아카데미 등)을 강화할 계획임

현장의 시급한 AI컴퓨팅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26년 상반기까지 국가AI컴퓨팅센터, 슈퍼컴 6호기에 총 1.8만장 규모의 컴퓨팅 자원(고성능 GPU)을 확보함. 이와 함께 AI 밸류체인 전반에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전력·입지 관련 제도개선 등으로 AI 데이터센터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함

AI 학습을 위한 양질의 공공·민간데이터를 확충하고 개방을 확대함. 그간 자율주행 분야에만 허용되었던 비정형 원본데이터(영상 등) 활용을 사회적·산업적으로 필요한 분야로 확대하는 한편, AI 연구에 필요한 기간동안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활용특례를 마련하고, 범죄 예방 등 공익적 AI개발을 위해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법 처리근거를 확대함

최고급 AI 인재를 양성·확보하기 위해 AI분야 도전적 문제를 해결하는 ‘글로벌 AI챌린지’를 개최를 추진하고, 작년 미국에 개소한 ‘글로벌 AI 프론티어 랩’을 유럽 등 다른 국가로 확대할 계획임. 아울러, 국내 AI 신진연구자를 집중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한편, 기업이 원하는 AI 융합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산학 협력형 AX대학원 신설을 추진하고, 혁신형 교육(이노베이션 아카데미 등)을 강화할 계획임

현장의 시급한 AI컴퓨팅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26년 상반기까지 국가AI컴퓨팅센터, 슈퍼컴 6호기에 총 1.8만장 규모의 컴퓨팅 자원(고성능 GPU)을 확보함. 이와 함께 AI 밸류체인 전반에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전력·입지 관련 제도개선 등으로 AI 데이터센터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함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명	내용	시행일자
행정안전부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5-08-19 시행 예정

우수기업 인증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우수기업 인증 유효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우수기업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기업은 인증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공정거래위원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25-02-14 시행
---------	------------------------------------	---------------

치료 대상자 및 위험도에 따라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단계적으로 허용하고, 첨단재생의료의 안전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331호, 2024. 2. 20. 공포, 2025. 2. 21. 시행)됨에 따라, 첨단재생의료 치료의 위험도 구분과 그 제공기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의 첨단재생의료 치료계획 심의에 필요한 사항 및 첨단재생의료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심의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통합·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첨단재생의료 치료의 위험도 구분 (제4조제2항 신설)

- 첨단재생의료 치료의 위험도는 현행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의 위험도 구분 기준에 따라 배아줄기세포 및 역분화줄기세포를 이용하는 치료 등은 사람의 생명 및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불확실하거나 그 위험도가 큰 치료로, 배아줄기세포·역분화줄기세포 외에 치료대상자 본인으로부터 유래한 세포를 최소조작하여 이용하는 치료 등은 사람의 생명 및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잘 알려져 있고 그 위험도가 미미한 치료 등으로 구분함

② 첨단재생의료 치료의 제공기준 마련 및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의 제공기준 보완 (제10조)

-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제공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적합 통보를 받은 첨단재생의료 치료계획을 준수하도록 하는 등 그 제공기준을 정하는 한편,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치료의 안전성 및 유효성에 관한 새로운 정보를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이 취득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임상연구·치료 대상자에게 알리도록 함

③ 첨단재생의료 치료계획의 제출 및 심의 (제11조의2 및 제13조의2 신설)

- 첨단재생의료 치료계획에는 해당 치료의 목적·제공기간, 위험도에 대한 자체 구분 및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근거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첨단재생의료 치료계획 심의결과와 통보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에 심의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12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하도록 하는 등 첨단재생의료 치료계획의 제출 및 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④ 전문위원회의 통합·신설 (제15조)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심의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전의 세포치료 전문위원회 및 유전자치료 전문위원회를 세포·유전자 전문위원회로 통합하고, 조직공학치료 전문위원회 및 융복합치료 전문위원회를 조직공학·융복합 전문위원회로 통합하며, 임상치료 전문위원회를 신설함

보건복지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2025-02-21 시행

의약품 제조업자 등이 품목허가 당시 제출되었던 임상시험자료를 근거로 일정기간 동안 새롭게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신청하거나 품목신고를 할 수 없도록 허가 시 제출된 임상시험자료의 보호제도를 신설하고, 의약품 신약 등의 재심사 제도를 폐지하며, 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제도를 위해성 관리제도로 통합하는 등의 내용으로 「약사법」이 개정(법률 제20328호, 2024. 2. 20. 공포, 2025. 2. 21. 시행)됨에 따라,

자료보호대상 의약품으로 이미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과 유효성분의 종류 또는 배합비율이 다른 전문의약품 및 이미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과 유효성분은 동일하나 투여경로가 다른 전문의약품 등으로 정하고, 의약품 품목허가 신청 또는 품목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위해성 관리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 안전성·유효성 중점검토항목, 약물감시 계획 및 방법 등을 정하며, 위해성 관리를 실시한 결과를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간은 6개월마다, 그 이후에는 1년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의약품 등의 제조소 또는 영업소의 명칭 변경,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 시 의약품 등의 제조업·수입업·위탁제조판매업의 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면 의약품 품목에 대한 변경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일괄하여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5-02-23 시행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근로자가 유산·사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종전에는 사업주가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이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유산·사산휴가를 주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유산·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주도록 확대함**으로써 여성 근로자에 대한 모성 보호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25-02-23 시행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10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도록 하고,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에게 허용하는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에는 임신 전(全) 기간 동안 허용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법률 제20520호, 2024. 10. 22. 공포, 2025. 2. 23. 시행)됨에 따라,

10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미숙아의 범위를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천 500그램 미만인 영유아로서, 특별한 의료적 관리를 위해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영유아’로 정하고, 미숙아 출산 시 출산전후휴가 부여 절차를 정하는 한편, 임신 전 기간 동안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해야 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범위를 임신기간 중에 유산·조산 위험이 있는 임신 및 출산 관련 질환 등을 진단받은 여성 근로자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5-02-23 시행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나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 및 장애아동의 부모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521호, 2024. 10. 22. 공포, 2025. 2. 23. 시행)됨에 따라,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사용하려는 경우 육아휴직 신청서에 해당 사실을 적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환경영향평가 등의 과정에서 설명회나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 온라인 설명회·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재해·재난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일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환경영향평가법」이 개정(법률 제20334호, 2024. 2. 20. 공포, 2025. 2. 21. 시행, 법률 제20518호, 2024. 10. 22. 공포, 2025. 2. 21. 시행)됨에 따라, **온라인 설명회·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일시 및 인터넷 주소 등을 각각 1회 이상 공고하도록 하고, 재해·재난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협의 요청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를 사업계획, 해당 사업지역의 환경현황 및 환경보전방안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회의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자 등이 설명회·공청회 개최 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해당 시·군·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기본계획의 종류에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지정 등을 추가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규조림 사업 등을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입법(행정) 예고 법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명	예고 법령안	의견접수기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5.02.19. ~2025.04.01.

온라인광고 관련 계약, 개인 간 거래 등 전자거래 분야별 전문적인 분쟁 조정을 위하여, 설립 목적이 명확하지 않은 분과위원회 운영 규정을 삭제하되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분쟁조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분야별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안 제19조제4항)

※ 문의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산업제도과](tel:044-202-6145) (전화: 044-202-6145, 팩스: 044-202-6033)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5.02.20. ~2025.04.01.
---------	-------------------	-----------------------------

외국 정부 간 양해각서·협정 등이 체결되어 있는 국가의 단체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전담여행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관광진흥법」 개정에 따라, 전담여행사 지정요건, 전담여행사 지정의 유효기간, 갱신, 전담여행사 제재 등 전담여행사 운영 등을 정하기 위한 하위법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전담여행사 지정요건, 전담여행사의 유효기간 2년, 갱신, 관리위원회 운영, 지정요건에 세부사항·갱신 절차·관리감독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문체부 고시에 위임함을 규정(안 제21조의2 신설)
- ② 전담여행사 제재, 단체여행객 무단이탈 발생 정도에 따른 처분 등 행정처분 규정(안 제21조의3 신설)
- ③ 무단이탈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규정(안 별표00 신설)
- ④ 의무사항 불이행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규정(안 별표00 신설)
- ⑤ 전담여행사 지정서 서식 규정(안 별지 제00호 서식 신설)

※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국제관광과](tel:044-203-2836) (전화: 044-203-2836, 팩스: 044-203-3480)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5.02.21. ~2025.04.02.
---------	--------------------------	-----------------------------

온라인게임 가입 시 과몰입 예방을 위하여 모든 이용자 본인인증을 의무화하고 있어 본인 인증수단이 없는 청소년의 경우, 등급분류상 전체이용가 게임임에도 불구하고 온라인게임 이용이 불가하여 청소년의 게임문화 향유권을 제한하는 등 현행 제도운영 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이에 **전체이용가 게임물은 이용자 회원가입 시 실명·연령 확인 및 본인인증 의무 적용에서 제외** (안 제8조의3제9항)

※ 문의처: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tel:044-203-2488) (전화: 044-203-2488, 팩스: 044-203-3456)

산업통상자원부

무역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5.02.19.
~2025.04.01.

기업·지자체의 무역금융 수요에 탄력적 대응과 함께, 무역보험기금 출연 자원 다양화를 위해 무역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무역보험기금 출연가능 기관을 기존 정부, 다른 기금, 은행에 더해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 기관에 지방자치단체 및 기업을 추가 (안 제3조 신설)

※ 문의처: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과](tel:044-203-4041) (전화: 044-203-4041, 팩스: 044-203-4708)

환경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5.02.21.
~2025.04.02.

환경기술 개발 및 환경산업 육성에 필요한 환경기술인력의 양성, 확보·관리 등을 위해 환경기술인력의 육성에 관한 사무에 고유식별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환경기술인력의 육성 관련 업무를 환경산업과 관련된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 ① **환경기술인력의 양성 및 교육 강화, 확보·관리 등 환경기술인력의 육성에 관한 업무를 환경산업과 관련된 전문기관에 위탁 근거 마련** (제33조제10항 신설)
- ② **환경기술인력의 육성에 관한 사무에 대한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 처리 근거 마련** (제34조제7호 신설)

※ 문의처: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tel:044-201-6688) (전화: 044-201-6688, 팩스: 044-201-6691)

환경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2025.02.21.
~2025.04.03.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재활용지정사업자의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대상을 기존 ‘합성수지나 그 밖의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에서 ‘페트(PET, polyethyleneterephthalate)를 사용하여 최종 제품을 생산하는 생수생산업 및 기타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이에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가 있는 재활용지정사업자의 관련 업종과 대상을 변경 (안 제32조 및 제33조)

※ 문의처 : [환경부 자원재활용과](tel:044-201-7381) (전화: 044-201-7381, 팩스: 044-201-7394)

국토교통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2025.02.19.
~2025.03.31.

현행법은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 등 토지등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서면 동의서 작성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정족수 확보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반면, 전자적 방식을 통한 동의는 의사결정 기간의 축소, 토지등소유자의 편의성 제고, 인증을 통한 본인확인 용이 등 다양한 장점이 있으므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서면 동의서와 함께 전자적 방법을 통한 동의서 제출도 허용하여 관련 절차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노후계획도시 정비 추진과정에서 기본계획 또는 특별정비계획에 변경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관련 절차 이행에 상당한 기간과 행정력이 소요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관련 절차를 생략 또는 간소화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사항의 종류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확대하여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고 노후계획도시의 신속한 정비사업을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 사업시행자 지정, 총괄사업관리자 지정에 대해 토지등소유자가 동의 시 전자적 방법 허용 (안 제16조제1항, 제22조제3항, 제24조제1항)
- ② 기본방침에 따른 연간 허용 정비물량 산정 시 관할 및 연접 지역의 주택수급 여건을 고려하여 기본계획을 수정하는 경우와, 통합심의 심의 결과 반영을 위한 특별정비계획의 변경을 각각 경미한 변경 사항에 추가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 (안 제5조제2항 및 제17조제3항)

※ 문의처 : [국토교통부 도시정비기획과](tel:044-201-4924) (전화: 044-201-4924, 팩스: 044-201-5910)

국토교통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5.02.21.
~2025.04.02.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해 도심 내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개선, 조합설립 동의요건 등에 대한 규제완화, 조합설립 동의 및 총회 의결 등에 전자적 방법을 도입·활성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20549호, 2024. 12. 3. 공포, 2025. 6. 4. 시행 및 법률 제20759호, 2025. 1. 31. 공포, 2025. 5.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재건축진단 제도의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 및 재건축 조합설립 등을 위한 동의요건 완화 대상을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문의처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전화: 044-201-3390, 팩스: 044-201-5532)

방송통신위원회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2025.02.19.
~2025.03.31.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의 일부를 그 소속기관인 방송통신사무소에 위임하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라 구체적인 위임 업무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신설하고자 함

위치정보사업자 등의 신고 업무 방송통신사무소 권한 위임 근거 신설 (안 제37조의2제1항 신설)

※ 문의처 :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이용자기반과 (전화: 02-2110-1526, 팩스: 00-2110-0157)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무위원회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의원 등 12인)

2025-02-17 발의

현행「보험업법」은 보험설계사의 모집 관련 법 위반 시 업무정지 또는 등록 취소만 규정하고 있어 경미한 법규 위반의 경우에 주의나 경고 조치를 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임. 이는 보험설계사와 업무차이가 없는 개인보험 대리점의 경우에는 현행「보험업법」에 따라 주의·경고조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을 야기하고 있음

또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보험설계사를 등록취소하는 가중제재 규정을 두고 있으나, 가중 제재를 위한 기산점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업무정지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오래되었어도 일률적으로 등록취소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

이에 경미한 법규 위반행위(예컨대, 법규위반은 했지만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경우)에 대해서는 주의 또는 경고 등 경징계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5년 이내에 범위에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2회 이상 누적하여 받았을 경우에만 등록취소라는 가중제재 규정을 두어 보험설계사에 대한 제재를 합리화하려는 것임

정무위원회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의원 등 18인)

2025-02-17 발의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적시에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기 위해 자산운용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음. 이에 현행법은 보험회사가 다른 회사의 채권 또는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그 보유금액이 보험회사 총자산 혹은 자기자본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도를 정해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을 규제하고 있음

그런데 은행, 상호저축은행 또는 금융투자업자 등 다른 금융업권과는 달리 보험회사의 자산운용비율을 산정할 때 총자산 및 자기자본은 시가 등을 반영하여 작성된 재무제표상의 가액을, 다른 회사의 채권 또는 주식의 소유금액은 시가 등이 아닌 취득원가를 평가 기준으로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법이나 대통령령도 아닌 보험업감독규정에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IMF 사태 이후로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회계처리를 하는 것이 유가증권의 현재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투자신탁회사들이 파산에 이른 것을 계기로 모든 유가증권을 평가할 때 시가 등을 반영하여 작성된 재무제표상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변경되었으나 보험회사만 예외적으로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그리고 채권 또는 주식의 가격이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경우 총자산과 채권 또는 주식의 소유금액에 대하여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규제할 때와 비교하여 자산운용비율이 왜곡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자산운용비율을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총자산, 자기자본, 채권 또는 주식 소유의 합계액은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상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정함으로써 보험회사 자산운용의 실질적인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또한, 자산운용비율을 초과한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함으로써 보험계약자의 돈으로 다른 회사를 지배하는 현상을 방지하고자 함 (안 제106조제4항 및 제106조의2 신설)

정무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 등 15인)

2025-02-17 발의

「상법」은 주식회사의 자기주식(회사가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신이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주식) 취득 및 처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주권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면서, 취득 한도, 취득·처분 시 이사회 결의 등에 관한 특례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주권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처분에 관하여 기본적인 규제만 두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경영진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불공정거래에 악용되어 다른 투자자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현행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주권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소각하거나 주주에게 균등 배분하는 등 열거된 방법으로만 처분할 수 있도록 주권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처분 시 준수하여야 하는 방법을 상향 입법하여 주주평등의 원칙을 실현하려는 것임 (안 제165조의3제5항 신설 등)

정무위원회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2인)

2025-02-18 발의

최근 디지털 전환 등에 따른 은행 지점 축소로 디지털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이 위축되고 농어촌지역에 영업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한편, 핀테크 업체의 등장으로 온라인 환경에서 은행 업무의 통합에 대한 수요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를 위하여 저비용으로 은행의 오프라인 채널을 확대하여 이용자의 편익을 도모하는 한편 은행권 경쟁촉진을 위해 은행대리업을 도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일본은 2002년 은행대리업 제도가 도입되어, 유초은행(우편저축은행)의 경우 약 3,000여개의 우체국을 대리점으로 활용중이고, 호주의 경우에도 1995년 도입하여 호주 전역의 80개 이상의 은행이 3,500개 우체국과 제휴하여 은행업무를 위탁하고 있음

이에 우리나라도 은행대리업 제도를 도입하여 지방에 거주하는 금융 취약계층의 금융 서비스 이용을 지원하고

자 함. 이를 통해 수도권과 지방 간 금융 접근성 격차를 해소하고, 은행업 및 은행대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은행대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자본금, 인력 및 시설 등 요건을 갖추어 인가를 받도록 함 (안 제43조의5)
- ② 금융기관이 은행대리업을 경영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신고를 하면 인가를 받은 것으로 봄 (안 제43조의6)
- ③ 은행대리업의 범위는 은행업무의 대리 또는 중개업무로 하되 은행을 위하여 대리·중개한다는 사실을 표시하여야 하며, 은행대리업자는 은행대리업무를 재위탁할 수 있도록 함 (안 제43조의8 및 제43조의9)
- ④ 은행대리업자가 아닌 자는 유사상호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함 (안 제43조의10)
- ⑤ 은행대리업자는 은행대리업과 관련한 서류를 작성·보존하여야 하며, 은행은 그 서류의 열람 등과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및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43조의11 및 제43조의13)
- ⑥ 은행대리업자는 이용자의 재산을 자신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고 자신의 고유재산 또는 다른 이용자의 재산과 거래할 수 없도록 함 (안 제43조의12)
- ⑦ 은행대리업자에게 경영공시 및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등의 의무를 부과함 (안 제43조의14 및 제43조의15)
- ⑧ 은행은 은행대리업자가 은행대리업을 영위하면서 이용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함 (안 제43조의16)
- ⑨ 은행대리업자에 대한 벌칙을 부과함 (안 제66조 및 제69조)

정무위원회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의원 등 14인)

2025-02-18 발의

현행법은 부당한 계약승환의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의 부활청구 및 취소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보험계약이 같은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한 계약에만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같은 보험회사 내에서의 경우와 달리 다른 보험회사의 계약을 소멸시키면서 부당한 계약승환을 하는 경우에는 보험간의 비교 등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임

그러나, 2024년부터 신용정보원이 다른 보험회사의 계약정보 조회도 가능한 ‘비교안내시스템’을 구축하여 보험모집자가 새로운 계약 청약 시 신용정보원에 집중된 계약정보를 조회하여 비교안내에 활용이 가능해진만큼 동일한 보험회사 여부와 무관하게 보험계약의 부활청구 및 취소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보험계약의 부활청구 및 취소권을 다른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한 부당보험계약승환의 경우에도 적용하게 함으로써 보험계약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안 제97조제4항)

정무위원회

여성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의원 등 10인)

2025-02-19 발의

현행법은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업무 등과 세제상의 지원을 규정하여 벤처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음. 그러나 투자계약에 대한 별다른 제약은 두지 않아 최근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투자금에 대한 상환권을 투자계약에 따라 자신이 투자한 회사의 대표에게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음. 이로 인해 투자임에도 불구하고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투자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반면,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투자회사와 벤처투자조합의 경우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시 원칙적으로 제3자에게 연대책임을 지우는 것을 금지하되 이해관계인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이를 허용하고 있음

이에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게도 신기술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의무를 고의 또는 중과실로 투자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제3자에게 연대책임을 지울 수 없도록 하여 벤처기업을 보호하고 규제차익을 해소하려는 것임 (안 제45조제2항)

기획재정위원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인)

2025-02-17 발의

현행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 중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등 특정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 편성 전에 예비타당성조사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인구감소에 직면한 농촌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하여 대규모 사회간접자본투자를 통한 지역개발에 적극 나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로 인하여 제한을 받고 있음

이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8조의2에 따른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총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5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을 대상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받도록 완화하려는 것임 (안 제38조제1항)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의원 등 10인)

2025-02-18 발의

「소득세법」은 부동산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부동산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을 공익법인 등에 기부하려는 경우에도 해당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함. 그러나 해당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담으로 인하여 기부를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함

이에 거주자가 공익법인등에 기부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계산할 때 양도소득금액에서 기부예정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안 제85조의11 신설)

기획재정위원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의원 등 10인)

2025-02-18 발의

현행법은 기부문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상속재산 중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기부행위에 대한 세제특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기부문화는 여전히 미약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실정임

이에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은 출연금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산출세액의 10%를 세액공제하려는 것임 (안 제30조의2 신설)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의원 등 11인)

2025-02-10 발의

현행법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반도체, 이차전지, 우주항공 등 12대 국가전략기술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대기업·중견기업은 15%, 중소기업은 25% 비율로 투자금액의 일정부분을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음

국제적으로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에 대한 국가 간 경쟁이 매우 치열한 상황에서 자국의 첨단산업에 대하여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 경쟁 국가는 천문학적인 현금성 보조와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등의 투자 확대 정책을 실시하고 있음. 국내 기업들의 국제경쟁력을 경쟁 국가 기업 수준으로 맞추어 글로벌 시장 점유율과 기술 경쟁력을 제고 하기 위하여 반도체 기술을 포함한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를 진흥하고 산업 생태계 전반의 동반성장을 장려할 필요성이 있음

한편, 기업의 투자 의사 결정과 투자의 완결 기간은 단기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공장 신설 등 신규 투자 역시 행정적 절차 및 전력망 구축, 용수 공급 계획 등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음. 그럼에도 현재 투자세액공제

제도는 2~3년의 한시법으로 시간이 소요되는 기업의 투자 결정 및 실행 과정과 맞지 않음 측면이 있음

이에 국가전략기술 관련 세액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현행 2027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국가전략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안정적인 투자 계획에 보탬이 되게 하는 한편,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중소·중견기업, 대기업이 비수도권에 투자했을 경우를 대상으로 각각 10%씩 상향**하여 동반성장과 건전한 산업생태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안 제24조제1항제2호가목2)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인)

2025-02-19 발의

현행법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한 기업이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최초 5~10년 동안 발생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하고 이후 2~3년 동안 발생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를 감면하고 있음. 또한 법인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유사한 규정을 통해 법인세를 감면하고 있음

한편 대다수의 농촌지역은 인구감소 및 고령화로 인하여 소멸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만희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농촌구조전환 우선지역을 지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촌인구 유입 등에 관한 시책을 세우는 등 농촌에 대한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이러한 농촌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공장이나 기업 본사 이전을 통한 인구 유입이 필요하므로 농촌구조전환 우선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이나 법인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업이나 법인이 공장이나 본사를 농촌구조전환 우선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세액 감면기간이 **성장촉진지역, 인구감소지역 등에 준하여 적용**되도록 특례를 두려는 것임 (안 제63조제1항제2호가목2)가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천하람의원 등 10인)

2025-02-19 발의

현행법은 수출 및 국가이미지 환경에 파급효과가 큰 영상콘텐츠 제작을 위해 국내에서 지출한 제작비용에 세액공제 제도를 두어 영상문화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콘텐츠 산업은 투입 대비 경제적 파급효과가 높은 고부가가치 국가 전략산업이며, 청년 종사자가 타 산업에 비해 높아 청년 일자리 창출로 국가 미래 경쟁력이 높은 산업임

그러나 영상콘텐츠 제작 단계는 크게 제작준비-촬영제작-후반제작의 3단계로 구성되고 유통과 정산까지 수년의 기간이 소요되는 바, '3년 일몰제'는 동 제도가 추구하는 영상콘텐츠 제작비 지원 및 투자 활성화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제약이 될 수 있음

이에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특례의 일몰기한을 2035년 12월 31일까지 10년간 연장하여 영상문화콘텐츠 경쟁력을 대내외적으로 향상시키려는 것임 (안 제25조의6제1항)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의원 등 12인)

2025-02-20 발의

현행법은 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하여 세액을 공제하는 특례를 두어 내국법인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등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금 등에 출연하거나 협력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형고정자산을 무상 임대 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는 해당 금액의 일정비율을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런데 원·하청 근로자의 임금 격차 해소, 장기근속 유도, 조선업 구인난 해소 등의 목적으로 내국법인이 협력기업 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협력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에 출연하는 경우를 추가하여 조선업계 임금 격차 해소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8조의3제1항)

기획재정위원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0인)

2025-02-20 발의

현행법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사·제조·용역계약 등을 체결한 다음 물가변동 등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그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100분의 10 이내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납품대금 연동제가 시행되고 있음

그런데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으로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에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지불하는데도 발주기관인 국가나 공기업 등과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고정하는 고정불변금액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주요 원자재 가격이 100분의 10 이내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 이외에는 계약금액을 고정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과 관련하여 위탁기업이 받는 불공정한 처우를 개선하려는 것임 (안 제5조제3항 및 제19조제2항)

기획재정위원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송언석의원 등 13인)

2025-02-20 발의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다년도 계약의 유형으로 계속비계약과 장기계속계약을 정하고 있음. 그중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총사업비 예산을 확보하지 않고, 각 연도별 사업 소요 예산에 대해 매년 개별적으로 국회의 의결을 받아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의 계약유형임

그런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진행과정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을 비롯한 천재지변, 사업 용지에 대한 토지보상 지연, 주민 민원 대응, 예산축소배정 등과 같이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고 그 결과 총사업기간이 늘어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귀책사유 없는 사업 지연으로 인한 사업기간이 연장될 경우 인건비 등 필연적으로 사업비 증가가 발생하게 됨. 예를 들어 건설 현장의 경우 사업이 지연되면 현장 안전관리 등을 위해 배치된 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증가하게 됨. 그러나, 현행법은 귀책사유 없는 사업 지연에 따른 사업 기간 연장을 계약 기간의 연장 사유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의 손해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개정하여 **장기계속계약 시 총 계약기간을 약정하도록 하고, 그 계약기간 내에 계약상대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사업 지연이 발생할 경우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동시에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안 제21조제3항 및 제4항)

기획재정위원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등 11인)

2025-02-21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공사에서 예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인 경우, 순공사원가 (재료비, 노무비, 경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비용)의 98% 미만으로 투찰한 입찰자는 낙찰에서 배제되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최근 공사원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실적 제한 공사나 고난이도 공사를 제외한 일반 공사의 투찰가는 여전히 낙찰 가능 하한액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임

순공사원가는 공사의 적정한 수행을 위해 필수적으로 투입되어야 하는 최소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보다 낮은 금액으로 투찰하는 행위는 적자 시공을 감수하는 덤핑 입찰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시공 품질 저하, 공사 지연, 안전 문제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이에 개정안은 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순공사원가의 98% 미만으로 투찰한 경우 낙찰을 배제하는 예정가격 기준을 현행 100억 원 미만에서 500억 원 미만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안 제10조제3항)**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1인)

2025-02-17 발의

현행법은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에 대한 허가등 근거가 되는 법령에 새로운 기술·서비스를 활용한 사업에 맞는 기준·요건 등이 없거나 해당 법령에 따른 기준·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불명확하거나 불합리한 경우로 인해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사업화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시허가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관계기관의 장은 임시허가 유효기간 만료 전에 해당 법령을 정비하여야 하고 법령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나, 해당 법령 정비가 법률의 개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보지 않아 법률의 개정이 지연되는 경우 임시허가를 받은 서비스 제공이 중단되어 소비자 불편을 초래하고 사업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이에 정보통신융합 등 기술·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정비가 법률의 개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임시허가의 유효기간 연장을 제한하고 있는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안 법률 제20482호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37조제7항 단서 삭제)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의원 등 11인)

2025-02-19 발의

유튜브, 개인방송 시장의 확대와 함께 이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에 대한 범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대부분 소액의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오히려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를 통해 창출한 수익이 더 커 법의 실효성과 범죄예방 효과가 떨어지고 있음

이에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 형량을 상향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낸 경우에는 1억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거짓의 사실을 드러낸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며, 피고인이 유죄로 인정될 경우에는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몰수하여 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임 (안 제70조제1항 및 제2항, 제75조의2)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4인)

2025-02-20 발의

현행법상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국가안전보장, 공공의 안녕, 질서의 유지 등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지의 여부에 대한 심사(이하 “공익성심사”라 함)를 받도록 하고 있고, 최대주주가 되려는 자의 경우에는 공익에 미치는 영향과 더불어 기간통신사업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이용자 보호 등 종합적인 사항에 대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다른 주주의 주식처분으로 인하여 최대주주가 된 자는 공익성심사 대상이나 인가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아 기간통신사업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하여 심도 있게 검토되지 않고, 형식적인 서면 심의 등만을 거치고 있어, 최대주주 변경 과정에서 과기정통부장관의 인가를 피하는데 악용될 소지가 존재함. 아울러 기존의 최대주주가 주식을 매각하여 비자발적인 최대주주 변경 발생 시, 사업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공백상황으로 공익성 심사 신청이 늦어지고, 정부의 공익성 심사가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다른 주주의 주식처분 등으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가 된 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주요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요 주주대상으로 하여금 보유주식 수 또는 보유 목적 변동 시 기간통신사업자에게 통지의무를 부과하도록 하고 (안 제10조제5항 및 제9항 신설), 공익성심사 시 국가안전보장, 공공의 안녕, 질서의 유지 등에 필요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간통신사업자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안 제18조제1항제4호 등)

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인)

2025-02-17 발의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에서 특정 업종을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5년간 재산세를 면제, 그 후 3년간은 50%를 경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특례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지역은 확대되는 추세로 해당 지역에 대한 보다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위 특례의 일몰기한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 (안 제75조의5제1항)

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의원 등 10인)

2025-02-18 발의

공익법인 등이 제3자로부터 무상으로 부동산을 기부받을 경우에는 그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를 납부하여야 함. 이는 취득세 및 재산세를 납부할 재원이 없는 공익법인 등에 부담으로 작용하여 기부자가 부동산을 기부할 의향이 있어도 기부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특례기부금단체 및 일반기부금단체가 제3자로부터 무상으로 증여받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하되, 기부받는 공익법인 등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를 제외함**으로써 기부행위가 편법적인 경영권승계 등 방법으로 악용되는 것은 방지하려는 것임 (안 제40조의4 신설)

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인)

2025-02-19 발의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이나 사업장 신설 및 이전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음

한편 대다수의 농촌지역은 인구감소 및 고령화로 인하여 소멸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만희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을 지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촌인구 유입 등에 관한 시책을 세우는 등 농촌에 대한 관리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이러한 농촌 소멸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양질의 일자리 공급이 필요하므로 농촌구조전환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및 이전하는 기업에게도 세제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창업이나 사업장 신설 및 이전을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하는 대상지역에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을 추가하려는 것임 (안 제75조의5제1항)**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굴 산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정점식의원 등 14인)

2025-02-20 발의

굴은 단백질, 아연, 타우린, 오메가-3와 칼슘 및 칼륨 등 영양성분이 풍부하여 피로회복, 어린이 성장발육에 탁월한 효과가 있고 전 세계인이 유일하게 날것으로 먹고 있어 식품시장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산업으로 주목을 받고 있음

현재 우리나라는 남해안을 중심으로 400여개소의 굴까기작업장에서 1일 2만 2천여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5,371ha 굴수하식 어업권에서 연간 30만톤의 굴을 생산하여 국내 및 미국, 일본, 캐나다, 홍콩, EU 등 25개국에 수출되고 있음. 특히, 우리나라 굴산업은 세계 시장에서 중국에 이어 2위의 생산국으로서 미국 FDA가 지정한 수출용패류생산해역에서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관리 생산된 굴을 약 8천만달러 이상을 수출하는 등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유망산업으로, 소위 “세계일류 상품”, “바다의 우유”라 불리며 수산물 수출을 선도하고 있음

하지만 굴산업의 경쟁력에도 불구하고 국가 차원의 굴산업 진흥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과 노력은 미흡한 실정으로, 굴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굴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굴산업을 활성화하여 국민경제의 발전과 어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0인)

2025-02-17 발의

현행법은 수탁·위탁거래 시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은 약정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하되, 위탁기업이 소기업인 경우, 단기 거래나 소액 거래인 경우, 수탁기업과 위탁기업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납품대금 연동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납품대금 연동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하나의 수탁·위탁거래를 단기간 또는 소규모로 나누어 위탁하는 일명 ‘쪼개기 계약’ 등 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제재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납품대금 연동을 피하기 위한 탈법행위 유형을 수탁·위탁거래를 나누어 체결하는 행위 또는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를 요구하는 행위 등으로 구체화하고, 수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을 요청했다는 이유로 거래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납품대금 연동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려는 것임 (안 제21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25조제1항제14호다목 신설)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박상웅의원 등 14인)

2025-02-18 발의

현행법은 산업용지 또는 공장을 취득한 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관리기관에 양도하도록 하고 있고, 관리기관이 매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매수신청에 따라 다른 기업체나 유관기관에 양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산업용지를 분양받고 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기존의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지급하게 되어서 이러한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의 보호를 위해 위약금을 받지 아니하거나 경감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이에 **산업용지 분양계약을 한 중소기업자 및 중견기업자가 경영상의 어려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계약해지로 인한 위약금의 100분의 30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을 보호하여 지속적인 산업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40조의3 신설)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의원 등 10인)

2025-02-19 발의

「벤처투자회사 등록 및 관리규정」 및 「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중소벤처기업부고시)은 벤처투자회사와 벤처투자조합으로부터 투자받은 기업의 대표, 최대주주 등에게 기업의 투자금 상환 의무 등에 대한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는 투자계약 체결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개인투자조합 및 창업기획자에 대하여는 연대책임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투자받은 기업이 투자금을 상환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기업의 대표, 최대주주 등에게 고의·과실이 없더라도 개인투자조합 및 창업기획자가 그 개인에게 투자금 반환 등을 요구할 수 있어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등의 경영활동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고시에 규정된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의 연대책임 방지 규정을 법률에 상향규정하고, 개인투자조합 및 창업기획자에 대하여도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투자계약 체결을 금지함으로써 건전한 벤처투자 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14조제2항제4호의2, 제27조제1항제2호의2, 제39조제1항제2호의2, 제52조제2항제4호의2 신설)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의원 등 18인)

2025-02-19 발의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내외 신·재생에너지 수요·공급에 관한 통계자료를 조사·작성·분석 및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법령에서는 통계자료의 공개와 공개시기에 관하여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전년도 자료가 다음연도 말에 공개됨에 따라 기술의 진보에 따라 시시각각 변화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등 전 세계적인 시장 흐름에 뒤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통계자료를 신속히 분석·발표하도록 공개와 공개 주기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보급 환경의 신속한 파악으로 데이터 기반 정책결정 및 민간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안 제25조제3항·제4항 신설)

보건복지위원회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의원 등 13인)

2025-02-18 발의

최근 「의료법」 개정(2025. 12. 21. 시행)으로 전문병원 지정요건에 최근 3년간 3개월 이상의 의료업 정지 등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되고, 3개월 이상의 의료업 정지 등의 제재처분을 받으면 전문병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음

현행법은 전문병원 외에 상급종합병원을 지정제도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정제도의 취지와 제도 간의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개정된 전문병원 지정요건과 지정취소의 사유에 맞춰 상급종합병원의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상급종합병원 지정요건으로 최근 3년간 3개월 이상의 의료업 정지 등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을 추가하고, 의료업이 3개월 이상 정지되거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폐쇄 명령을 받은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경우 등을 상급종합병원 지정취소 사유에 추가하려는 것임** (안 제3조의4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4항 신설)

환경노동위원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6인)

2025-02-17 발의

오늘날 대한민국의 노동시장은 간접고용, 하청, 파견, 플랫폼 노동 등 다양한 고용형태가 등장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 노조법은 사업주의 정의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규정하여 실질적인 사용자의 지배·결정권 아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고, 정당한 노동쟁의가 불법으로 판단되는 등 법적 보호에서 배제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

또한 쟁의행위를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하고 있어 정당한 쟁의행위에 제한이 발생하며, 이로 인해 불법으로 규정되는 쟁의행위를 이유로 노동조합과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여해 사실상 노동쟁의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음

이에 고용형태의 다변화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헌법상 노동3권 사각지대를 개선하기 위해 실질적인 사용자에게 대한 책임을 규정할 수 있도록 **사용자의 정의를 확대하고 근로조건에 대해 쟁의행위를 진행할 수 있도록 쟁의행위 범위 대상을 확대하고자 함**. 또한, **손해배상 면제책임 및 청구 대상을 추가하고, 신원보증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면제와 배상의무자별로 귀책사유 및 기여도에 따른 책임 범위 지정 등을 규정하여 노동3권 제약을 방지하고 노사간의 대화와 교섭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노사자치주의를 실현하고자 함 (안 제2조, 제3조 및 제3조의2 신설)**

환경노동위원회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12인)

2025-02-18 발의

현행법은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 등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하고 해당 사업자로부터 변제를 받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고 있음. 하지만 이러한 임금채권보장을 근로자 또는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사람에게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은 법적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한 상황임에 따라, 임금채권보장의 적용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임금채권보장의 적용 대상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노무제공자를 포함함으로써,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에 대한 임금 지급 보장을 확대하고 국민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3조 개정)**

환경노동위원회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등 13인)

2025-02-18 발의

현행법에서는 지정폐기물 허가권자인 지방환경청장과 일반폐기물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일반폐기물을 혼합하여 처분하는 시설의 동일한 한 가지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중복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있음. 이로 인해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두 개의 행정주체가 중복된 행정처분을 함에 따라 업체에 과도한 과징금 등이 부과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시·도지사는 동일한 위반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처분할 수 없도록 하여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과잉 제재를 방지하려는 것임 (안 제28조제6항 및 제69조 신설)**

환경노동위원회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1인)

2025-02-21 발의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비용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기업 간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를 허용하고, 배출권 거래 시장에서 형성된 탄소가격보다 한계감축 비용이 낮은 감축 기술을 우선 도입하도록 유도하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2015년부터 시행·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배출권 가격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배출권 가격이 낮아 기업의 감축투자 결정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이에, 정부는 적정 탄소가격을 형성하는 배출권 시장이 되도록 제도개선을 한다는 취지의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26~’35)’을 수립·발표하였음. 이에 따라 **배출권시장 활성화를 위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법적 근거와, 건전한 시장 운영을 위한 관리 감독 강화 규정을 법률에 반영하고자 함**

한편, 기업의 배출권 제출에 대한 의무사항을 보다 명확히 하고, 그밖에 검증기관 및 검증심사원, 검증협회 관리를 개선하는 등 입법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안 제19조 등)

국토교통위원회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2인)

2025-02-19 발의

최근 제주항공여객기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조류충돌은 국내 공항에서 매년 빈발하고 있는 사고 유형으로 제대로 관리되지 않을 경우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그런데 조류충돌은 이동하는 새의 특성상 단순히 공항 내 관리만으로 한계가 있어 공항 밖의 서식지 변화 등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조류에 대한 관리는 공항별로 지리적 위치와 주변 환경에 따라 서식하는 조류특성 차이로 인해 공항별 맞춤형 관리가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음

이에 **공항운영자 및 비행장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가 공항의 지리적 위치 및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조류충돌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매년 실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조류충돌로 인한 항공기사고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56조의4 신설)

국토교통위원회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 등 10인)

2025-02-19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의 일부가 준공되면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으나, 대규모 사업의 일부에 해당되어 개발비용의 명세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체 개발사업이 끝난 후 개발부담금을 결정·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도시개발사업 등의 개발사업은 사업 전체가 완료되기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데, 전체 사업의 준공 이후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게 되면 지역주민을 위한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등 개발부담금의 재투자를 통해 비용을 충당하기로 한 시설들의 설치가 지연되어 지역주민의 불편이 가중될 수밖에 없으므로 개발부담금의 결정·부과 시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사업시행자가 단계별 개발비용을 정확하게 구분·산출할 수 없어 개발비용 명세를 제출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전체 개발사업이 완료된 후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으며, 이 경우 금전가치의 하락, 일부 준공 후 부과될 수 있었던 개발부담금에 대한 이자손실 등을 배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개발부담금 부과와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법적 분쟁도 발생할 소지가 있음

이에 대규모 사업의 경우 전체 개발사업 완료 이전에 10년 주기로 준공된 일부 토지별로 개발부담금을 결정·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중간정산 규정을 마련하고, 사업시행자는 전체 개발사업이 완료되면 개발부담금을 다시 산정·조정받아 중간정산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발부담금의 결정·부과와 관련된 법적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대규모 개발사업의 전체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일부 준공된 토지에 대한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주민편의시설 등의 신속한 재투자 및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안 제14 조제1항 및 제14조의2제1항)

국토교통위원회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0인)

2025-02-20 발의

최근 주요 대도시와 신도시 등에서 공동주택의 노후화를 방지하고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 단지가 증가하는 추세이나, 복리시설 리모델링 증축 범위 및 제한,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의무 등으로 인해 신속한 리모델링 추진에 장애로 작용하고, 사업체계와 관련된 규정의 정비가 미흡하여 노후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

이에,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을 효율적인 개선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간 리모델링 시행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제기된 공동주택 단지 내 복리시설 리모델링 방법 및 범위에 관한 사항과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등록에 관한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리모델링으로 인한 신규주택 공급을 촉진하고 해당 지역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또한, 통합 리모델링의 시행,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조합 점검 및 해산, 소유권 이전고시 및 시행, 관련절차 간소화 및 규제완화와 공사비 검증 등 리모델링 사업 절차를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신속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노후화된 공동주택을 개선하여 국민 불편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

국토교통위원회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조승환의원 등 11인)

2025-02-21 발의

현행 도시재생사업은 민간 부문의 참여가 저조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사업이 추진되면서 도시재생의 자생력 확보가 어렵고 재정부담이 증가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부동산투자회사를 포함하고, 부동산투자회사가 해당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투자하고 지역주민에 우선적으로 청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시재생에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 등 해당 지역의 이익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부동산투자회사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점을 명시하고,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를 추가함 (안 제26조제1항제6호 신설 등)
- ② 해당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 속한 시·도 주민이 50퍼센트 이상 주식을 소유하고, 총자산의 일정 비율 이상 해당 지역에 투자한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주식을 일반 청약에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2조의2 신설)

국토교통위원회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손명수의원 등 15
인)

2025-02-21 발의

국내 건설산업의 노동생산성은 선진국 대비 60% 수준이며,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전체 산업 사망자의 44% 수준임. 또한, 고령화, 저출생 등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청년·여성 등이 건설산업을 기피하면서 건설산업의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는 상황임

반면, 일본 등 해외 주요국들은 저출산 등 인구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가 인프라의 안정적인 정비와 건설안전 확보 등을 위해 스마트건설 확산 보조금, 저리융자 등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음. 우리나라도 국토교통부가 건설산업의 생산성 제고 및 품질·안전·생산성 향상 등을 위해 스마트건설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새로운 기술 적용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 전문인력 부족 등의 장애요인이 있는 상황임

이에 스마트 건설기술의 활용 촉진과 스마트 건설기술을 적용한 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재정지원, 전문인력 양성, 우수기업 선정 등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향상하고 산업혁신을 도모하고자 함

여성가족위원회

결혼서비스업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조은희의원 등 15인)

2025-02-19 발의

결혼식 또는 결혼 관련 서비스 시장은 그 시장구조가 복잡하고, 공급자가 정보를 독점하고 있어 계약 불이행 등에 대한 정보가 소비자에게 충분히 제공되고 있지 않으며, 이로 인하여 청년층의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임

또한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결혼식 또는 결혼 관련 업계 대부분은 신고나 등록 없이 사업이 가능한 자유업종으로, 별도의 관리체계가 없어 피해 구제가 곤란한 상황임. 특히 일회성 소비라는 시장의 특성상 불만이 있더라도 결혼을 마친 이후 적극적인 민원 제기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시장의 자정 기능에 한계가 있음

이에 결혼식장 대여업 및 웨딩플래닝(Wedding-planning) 관련 업에 대하여 신고제도를 도입하고, 그 밖의 결혼 관련 서비스업에 대하여 표준계약서 사용 권장 및 보험가입과 영업보증금 예치 등을 함으로써 해당 업종에 대해 공적영역에서의 관리·감독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1. 위원회 일정

구분		일시	내용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	2/24(월) 10:00	- 고유법 심사
	전체회의	2/26(수) 10:00	- 고유법 의결, 타위법 심사 등
정무위	법안심사2소위	2/24(월) 14:00	- 법안 심사
	법안심사1소위	2/24(월) 16:00	- 법안 심사
	전체회의	2/24(월) 16:30	- 법안 의결 등
교육위	전체회의	2/26(수) 10:00	- 법안 의결, 업무보고 등
행안위	전체회의	2/25(화) 10:00	- 법안 의결
농해수위	해양수산 법안소위	2/26(수) 10:00	- 법안 심사
	농림축산식품 법안소위	2/27(목) 10:00	- 법안 심사
문체위	문화예술 법안소위	2/26(수) 14:00	- 법안 심사
	체육관광 법안소위	2/27(목) 14:00	- 법안 심사
복지위	법안심사1소위	2/25(화) 10:30	- 법안 심사
	전체회의	2/25(화) 11:00	- 법안 의결
국토위	교통법안소위	2/26(수) 10:00	- 법안 심사
	전체회의	2/27(목) 10:00	- 법안 의결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구분	일시	내용	주최	장소
토론회 및 세미나	2/24(월) 09:30	AI 군사적 활용 제약요인과 해소방안	강선영 의원실 등	의원회관 1소회의실
	2/24(월) 09:30	바람직한 UHD 정책개편 방안마련 토론회	이훈기 의원실 등	의원회관 8간담회의실
	2/24(화) 10:00	미래국토인프라 혁신포럼 4차 세미나 : 트럼프 2기 시대 건 설산업의 변화와 우리의 대응 방안	송석준·손명수 의원실 등	글래드 여의도 2층
	2/25(화) 07:30	[국회 외평포럼 특집 간담회] 트럼프와 달라진 세계. 3 : (경 제통상) 트럼프2기 보호주의,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김준형 의원실	의원회관 6간담회의실
	2/25(화) 10:00	(의류 재고 소각 금지, 순환경제로 가는 첫걸음) 지속가능한 패션산업 생태계 구축	김태선·박지혜 의원실 등	의원회관 9간담회의실
	2/26(수) 15:00	공동주택 위탁관리의 제반 이슈와 선진화를 위한 정책과제 : 정부와 관리주체, 입주자의 역할 중심으로	권영진 의원실	의원회관 1세미나실
	2/27(목) 13:30	자율주행 산업 지원 국회 토론회	맹성규·이소영 의원실	의원회관 1세미나실
자료집 등	2/25(화)	「Data+」 2025-3호(통권 제3호) 발간	국회도서관	
	2/26(수)	「World&Law」 2025-3호 발간		
	2/26(수)	「Data&Law」 2025-1호 발간		
	2/26(수)	「금주의 서평」 제717호(2025-8호) 발간		
	2/27(목)	「최신외국정책정보」 제4호(2025-4호) 발간		
	2/25(화)	「NABO 산업동향&이슈」 제74호 발간	국회예산정책처	

※ 위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들은 추후 제공 예정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273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일시	내용	주최	장소
자료집 등	2/17(월)	「Data+」 2025-2호(통권 제2호)	국회도서관	
	2/19(수)	「금주의 서평」 제716호(2025-7호)		
	2/20(목)	「최신외국입법정보」 2025-1호(통권 제264호)		
	2/20(목)	「NABO 재정경제통계 Brief」 제11호	국회예산정책처	
	2/21(금)	2025년 「예산춘추」 첫 번째호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2025.02.17.~2025.02.23.)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시	분야	내용
2/19(수)	금융	1.21. 금융당국의 상장폐지 제도변경 발표 이후 상장유지 결정을 이끌어 낸 최초사례 소개(A사, 코스닥 상장)
2/19(수)	소송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에서 출연금과 보조금을 구분해야 한다는 판결 선고
2/20(목)	소송	경의선숲길 관련 국가철도공단의 서울시에 대한 거액의 변상금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제1심 판결을 항소심에서 뒤집은 사례
2/21(금)	금융	은행 및 금융지주 금융규제 주간 브리핑 - Vol.23 (2025년 2월 3째주)
2/21(금)	중대재해	태풍 힌남노로 인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 침수사고 사건에서 저수지 관리자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전부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2/21(금)	ESG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중점 점검사항 사전예고
2/21(금)	바이오/헬스케어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 및 시행과 그 시사점

입법전략자문그룹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그룹(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Group)은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와 함께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실무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관 및 규제대응업무 전문팀입니다. 다양한 네트워크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춤형 Total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에 대해 “법률 제·개정 사항과 동향 파악,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문서의 내용(인쇄본 또는 전자문서) 및 이를 이용하여 편집한 내용은 제3자에게 공유하실 수 없으며,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유) 세종과 미리 상의하여 동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백대용 | 변호사

[프로필보기](#)



장대섭 | 고문

[프로필보기](#)



김광재 | 변호사

[프로필보기](#)



김성범 | 변호사

[프로필보기](#)



안현정 | 변호사

[프로필보기](#)



방세희 | 변호사

[프로필보기](#)



성재열 | 변호사

[프로필보기](#)



조성환 | 변호사

[프로필보기](#)

SHIN&KIM

법무법인(유) 세종